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8회 충청북도의회
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4. 20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3년 4월 11일
- 회부일자: 2023년 4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한 차례로 제한된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과 관련해 충청북도 내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.(안 제8조제3항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

- 학부모회는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구성·운영되는 단체이지만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 및 학교 운영과 관련해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현행 조례 제8조(임원의 임기)에서는‘**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**’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.
- 이는 일부 학교에서 특정 학부모가 장기적으로 회장 및 임원을 맡으며 발생하는 학교 내 세력화 우려 및 임원 선거전 과열로 인한 파행¹⁾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임.
- 그러나,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²⁾ 속에 인구 유입 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·산촌지역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부모회 활동 참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.
- 이에,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·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.

【첨부자료 1】

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현황

구분	초등학교	중학교	합계
초·중 전체 학교(교)	268	128	396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(교)	98	42	140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비율(%)	38.28	32.81	38.38

1)‘공정성 논란에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선출 연기’(경기도 수원시) / 중부일보 (23.03.15) 보도

2)‘충청권 초등학교 17곳...신입생 0명 : 충북 8곳·충남 9곳’/ 충청타임즈 (23.04.12) 보도

학부모회 설치 대상 학교 중 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현황

구분	초	중	고	특수	각종	합계
초·중·고·특·각종 전체 학교(교)	268	128	82	10	5	493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(교)	98	42	-	-	-	140
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비율(%)	38.28	32.81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29.11

※ 자료제공 :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

- 특히, 타 시도교육청의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가운데 ‘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, 충청남도교육청’의 경우 학부모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에 ‘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’는 내용을 담아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.

【첨부자료 2】

학부모회 회장 연임 규정 관련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

조례명	조항 / 조문 내용
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·자격)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자격)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.
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·직무·자격) ② 학부모회의 회장의 연임규정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조례명	조항 / 조문 내용
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8조(임원의 직무 등) ④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8조(임원의 임기) ③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임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.
서울, 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광주, 제주 * 대구 : 관련 조례 없음	- 한 차례만 연임 / 중임 - 울산 :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. 단, 신설 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.

-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장 등의 선출과정에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 임후보자 부족으로 인해 구성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학부모회의 위상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, 학교 학부모회 운영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